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한정애 (환경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있는 석면질병의 중대한 후유증에 대해 석면 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면피해구제법」이 개정(법률 제17842호, 2021. 1. 5. 개정, 2021. 7. 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후유증 명시(안 제6조제2항)

석면질병의 원격전이, 석면질병의 치료 또는 세균감염 등 외적 요인의 결합에 의한 후유증, 폐기능 고도장해 등

나.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구성에 성별 형평성 고려(안 제30조제1항)

성별을 고려하여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다. 법률용어 정비

“장제·장의”를 “장례”로, “자”를 “사람”으로 용어를 정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란“을 “사람”이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후유증”이란 다음 각 호의 후유증을 말한다.

1. 석면질병으로 발병하는 악성중피종, 폐암의 원격전이, 폐암의 암성 흉막염, 암성 림프관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에 따른 후유증
2. 석면질병으로 발병하는 악성중피종, 폐암의 치료 또는 세균감염 등 외적 요인의 결합에 의한 부작용이나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유발하여 지속적인 의사의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한 후유증
3.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폐기능 장애단계의 고도장애에 해당하는 후유증
4.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후유증

제8조의 제목 “(장의비의 금액)”을 “(장례비의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장의비는”을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으로, “금액으로 한다”를 “금액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장의비”를 “장례비”로 한다.

제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장의비”를 각각 “장례비”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제1호 중 “장의비”를 “장례비”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8호”를 “법 제25조제9호”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원장이”를 “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포함되어야”를 “포함되어야”로 한다.

제34조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 기술원에 신고하여야”를 “사람이 기술원에 신고해야”로 한다.

별표 1 제3호다목3) 중 “70”을 “70%”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전단 중 “제2호나목”을 “제2호라목”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법 제6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자</u>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 ----- <u>사람</u> ”이란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① (생략)	제6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u><신설></u>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중대한 후유증</u> ”이란 다음 각 호의 후유증을 말한다.
	1. <u>석면질병으로 발병하는 악성 중피종, 폐암의 원격전이, 폐암의 암성 흉막염, 암성 림프관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에 따른 후유증</u>
	2. <u>석면질병으로 발병하는 악성 중피종, 폐암의 치료 또는 세균감염 등 외적 요인의 결합에 의한 부작용이나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유발하여 지속적인 의사의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한 후유증</u>

②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이하 “피인정자”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액 등은 갱신되기 전과 같은 금액 등으로 한다.

제8조(장의비의 금액) ① 법 제11조에 따른 장의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0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은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는 당시의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으로 한다.

제9조(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유족

3.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폐기능 장애단계의 고도장애에 해당하는 후유증

4.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후유증

③ -----

----- 사람-----

-----.

제8조(장례비의 금액)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

----- 금액을 말한다.

② -----
-- 장례비 -----

-----.

제9조(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 --

조위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발성 악성종괴종 및 원발
성 폐암: 제8조에 따른 장의비
의 100분의 1천500에 해당하
는 금액

2.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제8조에 따른 장의
비의 100분의 750에 해당하는
금액

3. 석면폐증(제2급): 제8조에 따
른 장의비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4. 석면폐증(제3급): 제8조에 따
른 장의비의 100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구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
정)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기
술원이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법 제8조에 따른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이하 “판
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
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장의비와
법 제15조에 따른 구제급여조

-----.

1. ----- 장레비

2. ----- 장레
비-----
--

3. -----
-- 장레비-----

4. -----
-- 장레비-----

제12조(구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
정)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 장레비--

정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인정자가 해당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것인지에 관한 사항 2.·3. (생략) 제16조(기금의 용도) <u>법 제25조제8호</u>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 4. (생략) 제30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6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술원의 <u>원장이</u>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과반수 이상 <u>포함되어야</u> 한다. 1. ~ 5. (생략) ② (생략) 제34조(재심사청구의 절차 및 방법 등) 법 제38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u>신청하여야</u> 한다.	----- ----- ----- ----- 2.·3. (현행과 같음) 제16조(기금의 용도) <u>법 제25조제9호</u>----- ----- -----. 1. ~ 4. (현행과 같음) 제30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 ----- ----- ----- ----- ----- <u>원장이</u> <u>성별을 고려하여</u> ----- ---. ----- -- <u>포함돼야</u>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재심사청구의 절차 및 방법 등) ----- ----- ----- ----- <u>신청해야</u> -----.
---	---

제38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제38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u>자가</u> <u>기술원에 신고하여야</u> 하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 ----- <u>사람</u> <u>이 기술원에 신고해야</u>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연 락 처	(044) 201 - 6818